

지속 성장의 견인차 중소기업 · 벤처 · 소상공인

200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

공통사항

■ 지원기준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
■ 지원제한

-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
- ※ 업력 3년 미만의 기업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,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%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, 중소기업 · 벤처창업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부채비율기준 적용 배제
- [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]상의 무등록 공장
-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
- ※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외
- 임직원의 자금형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

■ 지원한도

- 창업 및 진흥자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(또는 매출액의 125%)
- ※ 구조개선자금(시설),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(시설), 중소기업 · 벤처창업자금의 경우 매출액기준 적용배제

■ 지원방식

-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서부 또는 순수신용 대출 - 특별경영안정자금,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, 수출금융지원 자금등
- 자금지원 결정후 은행에서 담보부, 보증기관의 보증서부, 순수신용대출 - 구조개선자금, 일반경영안정자금, 협동화자금,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등
- ※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 · 추천

■ 신청 · 접수기간

- 2003. 01. 06.~자금소진시까지

1. 구조개선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 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

■ 지원규모 : 10,0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▲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 ▲북한진출 중소기업

■ 지원범위

-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 · 개제하거나,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 · 개제 하는 경우 소요자금

- 기업간 인수 · 합병 및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이양받는 경우 구조조정 자금 등

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 (다만,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)
- 지원방법 :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지원

■ 신청 · 접수기관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2. 경영안정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생산 · 판매 ·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- 기업구조조정,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

■ 지원규모 : 20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일반경영안정자금 :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(전업율 30%이상)하는 중소기업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
- 특별경영안정자금 :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(전업율 30%이상)하는 최중부도 발생기업, 금융기관 · 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, 화의 · 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, 자본잠식 기업 등

■ 지원범위

- 원부자재구입, 경영 · 기술혁신, 기술도입 및 사업화, 국내 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- 재해,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■ 지원조건

- 일반경영안정자금
 - 대출금리 : 연 5.9% (변동금리)
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
- 특별경영안정자금
 - 대출금리 : 연 7.9% (변동금리)
 - 대출기간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 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

■ 신청 · 접수기관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3. 중소기업창업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우수한 기술력과 상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

■ 지원규모 : 27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창업을 준비중인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 · 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- ※ 지원제한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, 미용 · 오락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)

■ 지원범위

-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

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-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 운전자금 -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 (단,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)

■ 신청 · 접수기관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(담보부, 순수신용)
-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(기술평가 보증서부)
- 지역신용보증재단(소액 보증서부)

4.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 마련

■ 지원규모 : 7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지식기반 서비스업 (전업율 30% 이상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※ 예 : 정보통신서비스업, 정보처리업, 연구개발업, 인적자원 서비스업, 영화 · 방송 · 관광분야 등(퇴폐향락업종 영위기업 제외)
- ※ 구체적 업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

■ 지원범위

-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

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-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운전자금 -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동일기업당 10억원(단,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)

■ 신청·접수기간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5.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

■ 지원규모 : 2,5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제조업·건설업·운송업·광업
- 상시종업원 10인이하 업체
-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
- 상시종업원 5인이하 업체
- ※ 지원제외 대상금융
금융 및 보험업, 사채형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
■ 지원범위

-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

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- 대출한도 : 5천만원이내
-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- 상환방식 : 1년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
- 대출취급은행 :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외환, 조흥, 한미, 하나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은행, 농협

■ 신청·접수기간

- 지역별 소상공인지원 센터 (해당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)

6. 개발및특허기술 사업화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

■ 지원규모 : 6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최근 3년(거치기간) 내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중소기업, 중소기업 선정 Inno-Biz업체
- ※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과 Inno-Biz업체는 우대
-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(거치기간)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
- ※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

인정받은 특허 출원종인 기술포함

- 최근 3년(거치기간) 내 국내·외 대학,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

■ 지원범위

-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설비 등
-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, 추가개발비 등

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75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5억원(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)
- 대출방식 : 순수신용직접대출

■ 신청·접수기간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7. 수출금융 지원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된 경제 발전 도모

■ 지원규모 : 65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수출계약 중소기업
- ※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

■ 지원범위

- 15억원(한도)내에서 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, O/A)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(수출계약액의 90%이내)

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5.1%(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 준용)
- 대출기간 : 최장 180일(선적일로부터 7~15일 이내)
- 대출방식 :
 - 순수신용 혹은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 보증 (3:7)으로 지원
 -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시 정산

■ 신청·접수기간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8. 협동화사업 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, 공해방지시설, 창고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

■ 지원규모 : 1800억원

■ 지원대상

-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유통산업 관련업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

-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 제한없이 신청가능
- 창업일로부터 1년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/2범위 이내로 제한(단,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 센터 출업기업은 제외)
- 휴·폐업종인자,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)는 제외

■ 지원범위

- 시설자금 : 건물·부지매입비, 임차보증금, 건축공사 및 기계 시설설치비 (추진주체 : 50억원이내, 참가업체 : 40억원이내)
- 운전자금 :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(추진주체 : 30억원이내, 참가업체 : 20억원이내)
- 협업화 자금 : 판로개척, 원자재구매, 기술개발,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(추진주체 : 30억원이내, 참가업체 : 20억원이내)

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- 10년(거치기간 5년포함)
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- 5년 (거치기간 2년포함)

■ 신청·접수기간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9.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(융자)

■ 사업목적

-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지원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

■ 지원규모 : 3750억원

■ 지원대상 및 조건

-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
 - 지원대상 : 제조업(전업종 30% 이상), 유통업, 건설업, 지식기반 산업 및 영상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- 지원범위 : 공장·부지매입비, 시설도입·개체자금 및 건축 소요자금, 연구개발비 등
 - 대출기간 : 시설자금(8년, 거치기간 3년 포함), 운전자금 (3년, 거치기간 1년포함)
 - 대출한도 : 시설자금(10억원), 운전자금(3억원)
 -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- 지역특화품목 생산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
 - 지원대상 : 지역특화품목관련(단체),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, 지역특화품목생산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(예정) 중소기업
 - 지원범위 : 지역특화품목관련기술, 디자인, 소재개발, 전시, 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- 대출조건 :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대출조건 동일
- 시장재개발 사업
 - 지원대상 : 시장을 재개발, 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
 - 지원범위 : 재개발, 재건축 사업자금(소요자금의 75% 범위내에서 100억원 이하), 임시시장 설치자금 (5억원)
 - ※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건축·기반 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시장 재개발·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시시장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건물의 임차비
 - 대출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 - 대출기간 : 재개발, 재건축사업 자금(15년이내, 거치기간 5년 포함), 임시시장설치자금(8년, 거치기간 3년 포함)

■ 신청·접수기간

- 각 시·도 중소기업 지원담당과

10. 기술혁신개발사업(출연)

■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·무이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,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

■ 지원규모 : 1089억원

- 일반과제 :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
- 전략지원과제 : (2003. 4월 별도공고)
- ※ 국방분야 부품국산화개발과제는 국방품질관리시스템페이지 참조

■ 지원 대상

-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, 소기업,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,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

■ 지원범위

- 1년 이내 개발완료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
-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%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(S/W 업체는 500만원 이내 지원)

■ 신청·접수

- 기간 : 일반과제 (2002. 12. 27~2003. 01. 10), 전략지원 과제(2003. 4월 별도 공고)
- 기관 : 지방중소기업청(사무소)

11. 이전기술개발사업(출연)

■ 사업개요

- 국내외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이 개발·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·상업화 하는데 추가 기술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

■ 지원규모 : 59억원

-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보유업체
 - ※ 공장등록증보유 적용배제 대상
 - 표준분류상 지식·정보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영위기업
 -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 -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
 -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

■ 지원 범위

- 총 개발사업비의 75%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(S/W업체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)

■ 신청·접수

- 기간 : 1차 / 2003. 02. 04 ~ 03. 14
2차 / 2003. 04. 01 ~ 04. 11
3차 / 2003. 6월중
- ※ 예산소진시에는 2·3차 계획 취소됨
- 기관 : 지방중소기업청(사무소)

12.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(출연)

■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 하고, 자율적인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매칭펀드로 출연지원

■ 지원 규모 : 3429억원

■ 지원 대상

-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

■ 지원범위

- 지역컨소시엄(대학) : 정부(50%) + 지방자치단체(25%) + 참여기업(25%)
- 전국컨소시엄(연구기관) : 정부(75%) + 참여기업(25%)

■ 신청·접수

- 기간 : 2003. 01. 20 ~ 02. 05
- ※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전국컨소시엄을 통하여 애로기술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계획(2003. 2월경 예정)을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음
- 기관 : 지방중소기업청(사무소)

13.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(출연)

■ 사업개요

- 해외규격인증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·검사비용, 인증수수료등의 비용을 지원

■ 지원규모 : 150억원(3000업체)

■ 지원대상 및 분야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 - 수출기업, 소기업, 기술·품질수준 우수기업, 부품·소재생산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우대
 -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
 -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
- 지원분야
 - 제품인증분야 : CE, UL, FCC, VDE, CSA 등 68개분야
 - 시스템인증분야 : QS9000(TS16949 포함), TL9000, AS9000, ISO14000의 5개분야 (ISO9000은 제외)
 - ※ 시스템인증분야 중ISO14000, QS9000, TL9000의 경우, "한국인증원 (KAB)에 등록된 인증기관"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

■ 지원 범위

-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%까지 지원
-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,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

■ 신청·접수

- 기간 : 1차 / 2003. 01. 20 ~ 01. 30
2차 / 2003. 04. 01 ~ 04. 12
3차 / 2003. 07. 01 ~ 07. 11
- 기관 : 지방중소기업청(사무소)

인터넷이용안내

- 중 소 기 업 청 : www.smba.go.kr
- 중소기업진흥공단 : www.sbc.or.kr
- 기술신용보증기금 : www.kibo.co.kr
- 정책자금안내시스템 : www.finainfo.go.kr

문의 및 신청·접수기관 연락처

■ 중소기업청

서울	02-509-7018~9
부산·울산	051-601-5121~6
대구·경북	053-659-2221
광주·전남	062-360-9141
경기	031-201-6931~6
대전·충남	042-865-6112
인천	032-450-1114
강원	033-260-1616
충북	043-230-5314
경북	063-210-6414
남주	055-268-2515
제주	064-723-2101~5

■ 중소기업진흥공단

서울	02-769-6603~8
부산	051-630-7430~6
대구·경북	053-601-5261~9
인천	032-450-0520~6
광주·전남	062-600-3000
대전·충남	042-866-0114
충남출장소	041-531-7492~4
경기	031-259-7900
경기북부	031-878-0747~8
일산출장소	031-905-0747~8
충북	043-230-6800
전북	063-213-2130
경남	055-269-5840~4
울산	052-277-3283~6
강원	033-256-9611~3
원주출장소	033-749-3332
강릉	033-646-9967~8
제주	064-751-2055~7